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0. 20. 정혜경 의원 외 6명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 10.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정혜경 의원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 통보에 따라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단순 재기재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실태조사 등(안 제7조)
 - 안 제7조제2항 삭제

3. 검토보고 (조광현 전문위원)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광역17개소, 기초 226개소 총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법규 조례 7만9천건, 규칙 2만4천건을 일제조사한 결과 조례 1만 6614건, 규칙 3896건 총 2만 510건이 불합리한 조례로 조사 되었음.
- 정비 대상 유형별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23%,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례가 20%로 나타났음.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 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9%로 조사됨. 우리 구의 경우 10건의 조례가 정비 대상으로 통보됨.
- 이번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할 경우 관련 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조례 제7조제2항에서 같은 내용을 단순 재 기술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조문으로 보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통보 된 사항임.

-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공익을 해하는 바가 없음은 물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시급히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